2018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주홍철	93120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8-04-98*	종***	일반	2,600
2-24-83*	계****	일반	2,100
7-83-02*	국****	일반	48,150
2-91-95*	나***	일반	10,300
8-90-16*	소****	일반	22,400
2-34-03*	d ****	일반	6,000
2-91-70*	조****	일반	669,530
2-96-15*	혜****	일반	5,100
8-06-78*	EH****	일반	2,700
8-90-48*	현****	일반	4,500
2-90-44*	上***	일반	475,000
8-11-55*	<u> </u>	일반	24,700
2-09-77*	대***	일반	4,780
8-90-15*	현****	일반	138,3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, 국민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·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·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·난임시술비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
-1-

※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주홍철	93120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2-21-52*	열*****	일반	5,500
1-98-00*	<u> </u>	일반	10,000
2-50-00*	O¦*****	일반	321,100
3-97-00*	사*****	일반	9,2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,761,96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,761,96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, 국민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·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·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·난임시술비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
-2-

※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주홍철	931201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0	0	227,900	0	227,90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375-88-00***	한국카카오은행(주)	일반	0
신용카드	375-88-00***	한국카카오은행(주)	대중교통	227,900
인별힙	계금액			227,90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 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주홍철	931201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20,020,029	71,000	458,900	0	20,549,929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	104-86-39***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12,455,229
직불카드	104-86-39***	농협은행 주식회사	전통시장	24,000
직불카드	104-86-39***	농협은행 주식회사	대중교통	349,200
직불카드	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2,900
직불카드	375-88-00***	한국카카오은행(주)	일반	7,561,900
직불카드	375-88-00***	한국카카오은행(주)	전통시장	47,000
직불카드	375-88-00***	한국카카오은행(주)	대중교통	109,700
인별합	계금액	20,5		20,549,929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 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190123-77988201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4-

2018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18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주홍철	931201-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305-82-09746	사회복지법인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충 청남도지회	법정기부금	24,000	24,000	0
209-82-06136	사회복지법인승가원	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60,000	60,000	0
인별합계금액					84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5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